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채권 등의 매각 근거 마련〉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1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5.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이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5월 14일에 실효되어 청년층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9조의9(기한의이익상실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기한의이익상실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기한의이익상실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u>

2. 검토의견

-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학자금대출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제도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¹⁾를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단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에는 ‘구상채권’과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이 있으며, ‘구상채권’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장기 연체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단이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이고, ‘기한이익상실채권’은 학자금대출의 장기 연체(6개월) 등으로 당초 상환기한과 관계없이 남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을 의미함.

-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장기연체채권에 대하여 분할상환 등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채무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채권을 외부 채무조정기구에 매각한 사례도 있음.

과거 2014년에는 재단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여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이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밖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채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1년간 한시적으로 둔 바 있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74호)>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14.]

[법률 제12574호(2014. 5. 14.)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한편,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²⁾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채권 중 같은 법에 따른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일부 공공기관은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채권 매각 근거가 없더라도 내부규정 등에 따라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절차, 인수의 우선순위·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³⁾하고 있음.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과거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권 매각을 위해 법률에 한시적인 근거를 별도로 두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 매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채권 등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여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의 무담보채무 중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제도임.

새도약기금이 대상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을 소각⁴⁾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30~80%⁵⁾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함.

-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새도약기금의 매입기준에

3)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개별 법률에 채권 매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내부규정 등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고 있음.

4) 채권 소각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채무자임.

5)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채무조정은 원금의 20~70% 감면

해당하는 재단 보유 채권은 총 3,856명, 251억 7,400만원 규모로 추정됨.

< 새도약기금 매각 상품별, 연체기간별 대상(2026.5.27. 기준 추정) >

(단위: 명, 백만 원)

상품별			연체기간별		
구분	인원	금액	구분	인원	금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981	14,158	7년미만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56	52	7~10년	1,538	9,778
특별상환유예대출	17	108	10~15년	1,960	13,659
군복무이자유예	9	4	15~20년	349	1,134
정부보증부대출	1,755	8,931	20~25년	261	477
무이자대여	169	380	25~30년	73	125
농촌학자금대출	482	1,541	30년이상	2	1
합계	3,856	25,174	합계	3,856	25,174

* 자료 : 교육부

□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장기연체 학자금 대출 채권 등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될 경우,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재단의 장기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새도약기금의 매입기준에 해당하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3,856명 중 30대가 1,610명(41.8%), 40대가 1,490명(38.6%)으로, 30·

40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새도약기금 연령별 매각 대상 (2026.5.27. 기준 추정) >

구분	인원	금액
20대미만	-	-
20대	23	64
30대	1,610	10,239
40대	1,490	10,139
50대	551	3,235
60대	166	1,399
70대이상	16	98
합계	3,856	25,174

또한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32개 중 28개 기관⁶⁾은 이미 보유채권의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다만,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률 5%(채권 액면가 대비)를 적용하고, 과거 정부가 이미 손실을 보전한 바 있는 일부 채권 등을 제외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손실보전을 위해 약 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6)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한 공공기관 32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28개 기관은 채권 매입이 진행되었음. 협약 체결 후 채권 매입이 진행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개 기관임.

향후 관련 예산의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거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권 매각 근거는 1년간 한시적으로 두었던 반면, 개정안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장기연체채권의 매각 근거를 상시적으로 두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장기연체 채무자는 2022년 4만 2,099명에서 2026년 7월 말 5만 10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7년 이상 연체 채무자는 같은 기간 1만 779명에서 1만 6,015명으로 약 48.6%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연체 기간별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26년 7월 말) >

(단위: 건,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6개월~1년 이하	건수	11,606	13,769	15,695	16,761	16,522
	인원	3,835	4,698	5,149	5,309	5,327
1년~3년 이하	건수	27,830	31,882	42,806	50,027	52,446
	인원	9,556	10,317	12,881	14,771	15,408
3년~5년 이하	건수	32,061	26,145	21,080	24,792	31,952
	인원	11,525	9,409	7,581	8,226	10,202
5년~7년 이하	건수	24,014	22,798	21,557	17,597	15,684
	인원	8,884	8,384	8,060	6,639	5,913
7년 이상	건수	24,716	29,159	33,764	39,007	42,660
	인원	10,779	11,728	13,082	14,735	16,015
합계	건수	120,227	123,753	134,902	148,184	159,264
	인원	42,099	42,149	44,316	47,062	50,101

※ 합계는 계좌별 중복인원 제거

따라서 장기연체채권의 매각을 통한 채무조정과 함께, 장기연체채

권이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지 않도록 연체 초기의 상환지원 및 채권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전적인 관리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